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9.10.14(월) 총 4매(본문 4매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김영건, 주무관 박성준	
			· ☎ (044)201-3835, 3840, 3841	
보도일시		2019년 10월 1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14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10.14일부터 전조등,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「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」 개정·시행...튜닝 규제완화 본격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8.8일 발표한 ‘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’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‘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’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.

-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·검사를 면제(59건) 하였으며,
-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,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.

□ ‘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경미한 튜닝사항 27건*을 튜닝승인·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

* 27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

- (①전조등 변경)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(예 :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)

* (기존)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 하였음



- (②플라스틱 보조범퍼)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



- (③환기장치, ④무시동히터 및 ⑤무시동에어컨, ⑥태양전지판)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



- (⑦동력인출장치*, ⑧BCT 공기압축기**) 특수 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

*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

**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



- (⑨소음방지장치)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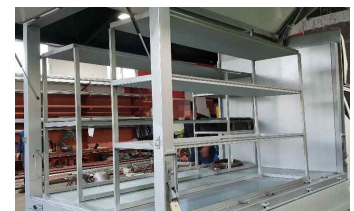


- (⑩캘리퍼 및 부속장치)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,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



- (⑪연결장치)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

*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



- (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)

- (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)



- (⑭경광등 제거) (⑮픽업형 난간대 설치·제거)



◆ ①⑥~②⑦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추가 규제완화되는 것으로, 제원의 허용차*를 미적용(①⑥~②⑥번은 높이, ②⑦번은 너비)

*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[별표33] ‘제원의 허용차’

- ①⑥루프캐리어, ①⑦수하물운반구, ①⑧안테나

- ①⑨자전거캐리어(차량 상부에 탈부착*)

* 차량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는 길이(제원의 허용차) 미적용

- ②⑩스키캐리어, ②⑪루트탑바이저(공기저항 감소목적)

- ②②컨버터블탑용롤바(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)

- ②③유리운송지지대(최대적재량 1톤이하)

- ②④루프탑텐트, ②⑤어닝(캠핑시 그늘막 용도)

- ②⑥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

- ②⑦승하차용 보조발판

(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)



○ 루프캐리어,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·검사가 면제되었으나, 설치 시 길이·높이·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,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.

- 그러나,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,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.

○ 특히,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‘승하차용 보조발판’의 경우,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~40mm까지만 허용되었으나,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·우 각각 50mm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“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·검사가 면제되며, 연간 약 2만여 건(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% 수준)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”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지난 8월 8일 발표한 ‘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’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,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으로

- 튜닝 인증부품 확대*의 경우,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‘한국자동차튜닝협회’에서 ‘LED 광원(전조등용)’, ‘조명 휠캡’, ‘중간 소음기’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*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, 인증받은 튜닝부품은 튜닝승인 없이 자유롭게 장착 가능함

-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(‘20년 2월 28일)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* 기존에 캠핑카가 승합자동차(11인승 이상)로만 가능하였으나, 승용·화물·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

*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력전달장치,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하여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, 당초 계획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함께 ‘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영건 사무관(☎ 044-201-3840),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조동식 부장(튜닝 승인 관련, ☎ 054-459-7861),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이원종 부장(튜닝 인증부품 관련, ☎ 070-4908-57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